



2020
**뇌성마비장애인의
복지가이드북**



강서뇌성마비복지관

www.grccp.or.kr



이 책은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복지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 책자는 강서뇌성마비복지관 홈페이지
(www.grccp.or.kr) 내 알림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내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강서뇌성마비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뇌성마비장애인 전문복지관입니다. 뇌성마비장애인의 보편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뇌성마비장애아동 및 성인의 재활치료, 뇌성마비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뇌성마비장애인 가족지원, 경제적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뇌성마비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장애는 중증장애로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중복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중증·중복의 장애로 교육, 건강, 고용 등 생애주기별 광범위한 일상에서 차별과 소외, 질병, 빈곤 등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뇌성마비장애인은 개인별 욕구에 적합한 개별적 지원과 생애주기별 다양한 영역에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원체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한 각종 복지정보 가이드북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장애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대상의 차이,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복지관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뇌성마비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정보를 수집·정리하여 복지가이드북을 발간, 보급함으로써 뇌성마비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뇌성마비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정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통중심, 변화중심으로 성장하는 복지관이라는 미션으로 지역사회 뇌성마비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뇌성마비장애인 복지가이드북을 발간하기 까지 노력하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뇌성마비복지관장

박세영

Contents

01

알려드립니다!	10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	12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제도	16

뇌성마비장애란	23
• 뇌성마비의 정의	24
• 뇌성마비의 원인	27
• 뇌성마비의 증상	27
• 뇌성마비의 분류	27
• 뇌성마비의 치료	30
• 뇌성마비장애인과외의 상호작용 매뉴얼	32

02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37
1. 경제적 지원	38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38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39
• 긴급복지 지원제도	40
• 장애아동수당	42
• 장애수당	43
• 장애인연금	44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46
• 희망키움통장(Ⅰ, Ⅱ)	46
• 내일키움통장	47
• 청년희망키움통장	48
• 근로장려금	49
• 자녀장려금	50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서울시)	51



2. 의료·재활·건강 지원	52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52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52
• 건강보험제도	53
• 건강보험 산정특례	54
• 건강보험 차상위	55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6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56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7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58
•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58
•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59
• 발달재활서비스	59
• 언어발달 지원	61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61
•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62
• 재난적의료비 지원	63
• 의료급여 제도	64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65
•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66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67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67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68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69
• 장애친화 건강검진	69



3. 임신·양육·교육 지원	70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71
•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71
•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7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72
• 출산비용 지원	74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5
- 영양플러스 76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77
- 영유아 건강검진 78
- 장애아 보육료 지원 78
- 장애아동 양육수당 79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81
-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81
- 방과후 보육료 지원 81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82
- 아이돌봄서비스 82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85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85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86
- 급식비 지원 87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87
- 고교학비 지원 88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88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89
-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89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91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91
- 장애인 정보화교육 92
- 평생교육바우처 93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94

4. 일상생활 지원 95

- 장애인 등록신청 95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96
- 장애인 활동지원 96
- 장애인콜택시(서울시) 97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98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00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00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01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102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02
-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03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103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04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05
- 서울시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106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106
-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108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110

5. 주거 지원 112

-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112
- 영구임대주택 공급 112
- 국민임대주택 공급 113
- 행복주택 공급 113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16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17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18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21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21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22
-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23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23
- 에너지바우처 124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25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27



6. 취업 지원 128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28
- 장애인 일자리 지원 130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31
- 자활근로 131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32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32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34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35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36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137
- 근로지원인 지원 137



7. 보조기기 지원 138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138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39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40
- 보조기기 관련 공적 자원 및 문의처 141
- 영역별 보조기기 안내 142



8. 법률 지원 144

- 무료 법률구조 제도 144
- 무료 법률상담 144
- 법률홍닥터 145
- 법률구조 제도 145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48



9. 문화여가 지원 149

- 통합문화이용권 149
- 스포츠강좌이용권 151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53
- 관광정보 안내 154
- 스포츠활동 156

03

시설안내 159



1. 이용시설 160

- 장애인복지관 160
- 보조기기센터 162
- 자립생활센터 163

- 주거복지센터 166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68
- 장애인체육시설 169



2. 생활시설 170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0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71
- 장애인거주시설 172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73
- 자립생활주택 174



3. 직업시설 176

- 근로사업장 176
- 보호작업장 177



4. 재활병원 178

- 재활병원 178
- 장애인치과 182



5. 교육기관 183

- 특수교육지원센터 183
- 장애전담어린이집 184
- 특수학교 185

알려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	474만 9,174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562만 7,771	650만 6,368	738만 9,715	827만 3,062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221만 6,91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0만 2,878	119만 6,792	154만 8,231	189만 9,670	225만 1,108	260만 2,547	295만 5,886
주거급여 (중위소득45%)	79만 737	134만 6,391	174만 1,760	213만 7,128	253만 2,497	292만 7,866	332만 5,37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7만 8,597	149만 5,990	193만 5,289	237만 4,587	281만 3,886	325만 3,184	369만 4,85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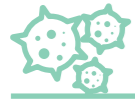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7만 4,587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55만 5,830원, 4인 기준 246만 9,57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

코로나19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줄인 말이며,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면서 널리 퍼지는 병입니다.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생긴 후 전 세계로 퍼졌으며, 2020년 현재에도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말

코로나19는 비말감염 됩니다.

- 비말감염은 입, 코에서 나오는 침과 콧물이 튀면서 병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잠복기가 길게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 병에 걸린 후부터 열이나 기침이 나는 등 아프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병에 걸린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확진자는 ○○○○명입니다.

-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말하며,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나라에서 정한 병원의 의사가 알려줍니다.

의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지역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확진자와 만난 사람 중 열, 기침 등으로 아픈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에 다녀온 사람,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곳에 갔던 사람 중 열, 기침으로 아프거나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번 환자의 접촉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 확진자와 만났거나 확진자가 갔던 곳을 비슷한 시간에 방문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 코로나19에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더 위험합니다.

-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병을 말하며, 지병이라고도 합니다.(고혈압, 당뇨병, 천식, 결핵 등)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병에 걸린 사람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음성’으로 나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확진자로 분류됩니다.

확진자 중 ○○명이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 후 다 나은 것을 말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따로 진료를 받는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플 때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한 병원입니다. 코, 목, 폐 등 호흡기 환자들과 다른 환자들을 따로 진료합니다.

확진자 중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깁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열, 기침 등이 심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확진자를 만난 사람은 우선 자가격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진자를 만났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도록 집 또는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발생한 ○○구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합니다.

- 확진자가 간 장소, 이용한 교통수단 등 그 사람이 다닌 모든 곳을 말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은 지역 시·군·구청에서 알려줍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철저히 방역하였습니다.

- 소독약 등을 뿌려서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고 깨끗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확진자가 왜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코로나19에 걸린 이유를 찾는 조사이며,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갔는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아픈가?

- 열이 난다. (체온계로 잰을 때 37.5도가 넘는 경우)
 - 몸살처럼 몸이 쑤시고 아프다.
 - 기침을 하고, 가래가 나온다.
 -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난다.
 - 숨 쉬는 게 힘들고 불편하다.
 -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 ※ 아픈 곳이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아프다면?

1 먼저 ☎1339나 지역보건소에 전화합니다.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1339 카카오톡 상담, ☎129 콜센터 영상수어상담을 이용합니다.
- 혼자 설명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활동지원사가 대신 설명합니다.

2 자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화로 알려야 할 내용)

- 이름, 나이, 사는 곳 등
- 현재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 확진자를 만났거나 확진자가 갔던 곳에 방문했는지
- 확진자 여러 명이 나온 곳과 관련이 있는지
- 지원이 필요한지(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

3 신고 후에는 안내에 따릅니다.

- 필요한 경우 자가격리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코로나19 접수, 검사,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시

-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거나 돌아올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39 문의
- 수어 상담, 시각 지원판,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등 접수와 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필요한 지원을 요청

5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지켜야 할 것

- 반드시 마스크를 쓰며,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벗지 않습니다.
-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걸어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6 코로나19로 격리해야 한다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이동 지원 : 격리 장소까지 이동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 일상생활 지원 : 격리해서 지내는 동안 필요한 것을 지원받습니다. (활동지원, 돌봄지원, 생활에 필요한 물건 지원 등)

7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

1. 외출을 하지 않으며, 병원 등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먼저 보건소에 연락해 알립니다.
 - 자가격리해야 할 사람이 외출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2.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공기를 맑게 합니다.
 - 밥은 혼자 먹습니다.
3.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 여러사람과 대화하거나 몸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장실, 세면대를 혼자 사용합니다. (여럿이 쓸 때는 사용 후 락스 등으로 소독합니다.)
4. 수건, 그릇, 수저 등 물건을 따로 사용합니다.
 - 빨래나 설거지도 따로 합니다.
5.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연락처

1 코로나19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접속 혹은 인터넷에서 코로나19 검색

2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 동선을 알고 싶다면?

- 각 지역 시청, 군청, 구청 홈페이지 접속

3 코로나19가 의심되면?

- 전화상담(☎1339) 혹은 지역 보건소 문의
- 카카오톡 상담(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제도

일반국민 대상 생활·생계 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긴급재난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전국민 *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확인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 보유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1인 : 40만 원, 2인 : 60만 원, 3인 : 80만 원, 4인 이상 : 100만 원 (신청시기)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 가구) : 2020.5.4.(월)부터 신청 없이 현금(계좌이체) 지급 - 온라인 신청: 2020.5.11.(월) 신청 시작 → 5.13.(수)부터 지급 시작 - 방문 신청: 2020.5.18.(월)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및 긴급재난지원금.kr 온라인신청 *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감염병으로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내용) 최소 14일 이상 치료·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긴급복지 한시적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20.7.31까지 긴급복지 한시적 확대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 확대</td> <td>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 위기가구 확대 동일 위기사유 2년 이내 재 지원 가능 등</td> </tr> <tr> <td>재산·금융기준 완화</td> <td> 실 거주 주거재산 지역별 3,600만~6,900만 원 차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 65% → 100% 확대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대상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 위기가구 확대 동일 위기사유 2년 이내 재 지원 가능 등	재산·금융기준 완화	실 거주 주거재산 지역별 3,600만~6,900만 원 차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 65% → 100% 확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청
	구분	내용						
대상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 위기가구 확대 동일 위기사유 2년 이내 재 지원 가능 등							
재산·금융기준 완화	실 거주 주거재산 지역별 3,600만~6,900만 원 차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 65% → 100%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내용)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 등 지원 								
특별돌봄 쿠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내용) 아동 1인당 4개월 40만 원 상당 돌봄 쿠폰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초생활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 (내용) 4개월 한시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금* 차등 지급 *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 (현행) 6개월 이내 참여 제한 → (개선) 직후 참여 가능 	온라인 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내용) 활동비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 소정(급여 약 20% 추가)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 예시) 활동비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상품권 5만 9,000원을 추가 지급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 상품권수령(판매처)
건설일용 근로자 무이자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건설일용 근로자 (내용) 1인당 최대 200만 원 무이자 대출 	전국건설 근로자공제회 (☎1666-1122) 신청
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 매출 없이 일정 기간 휴업점포 (내용) 폐업점포 최대 300만 원, 휴업점포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첨부서류, 지출 비용 증빙서류 등
코로나19 폐업 점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특별재난지역 폐업 점포 (내용) 철거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구분	지원대상	신청기한	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예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① 소득감소 요건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 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6일 까지 신청 시 3·4·5월 분 신청 ※ 3월 기 납부금 5월 환급 5.15일 까지 신청 시 4·5·6월 분 신청 ①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 납부예외 신청사유 입증서류 1부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등) - 필요서류 목록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참조 	국민연금공단 신청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사업장가입자) 신청 가능 * (사업장가입자) 신청가능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063-713-5608·5612)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인 미만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기한 연장 3~5월분 적용 신청기한: ~ 7/10까지 ※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가능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① 필요서류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건설·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신청 (☎1588-0075)

※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산재보험·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초저금리 (1.5%수준)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신용등급 4~10등급 (내용)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기간) 2020.4.1일 부터 훌쩍제* 신청 * 훌쩍날: 생년이 훌쭉, 짝수날: 생년이 짝수인 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1357, ☎042-363-7130·7210·7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신용등급 4~10등급 (내용)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지원 	IBK기업은행 신청 (☎1588-2588, ☎1566-25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신용등급 1~3등급 (내용)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지원(2020년 12월 까지만) 	시중은행(14개) 신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내용)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 보증비율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신청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청
긴급소액자금 전액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업종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내용) 100%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4월~9월 한시 운영) 	(☎1588-7365) 신청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내용)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모든 금융권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내용) 조정채무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경과 후 부터 상환계획 재 이행 (유예기간 동안 이자면제, 단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신청기간)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청 (전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약정 채무자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신청 (전화, 12개 캠프 지역분 부 방문)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조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무담보채무자</td> <td>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td> </tr> <tr> <td>담보부채무자 (감염병특별 관리지역 한정)</td> <td>연체 가산이자(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 까지 유예</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무담보채무자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담보부채무자 (감염병특별 관리지역 한정)	연체 가산이자(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 까지 유예
	구분		내용					
	무담보채무자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담보부채무자 (감염병특별 관리지역 한정)	연체 가산이자(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 까지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상환유예</td> <td>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td> </tr> <tr> <td>이자지원</td> <td>감염병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 이용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이자지원	감염병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 이용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	서민금융진흥원(☎1397), 미소금융 지점 신청 →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구분	내용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이자지원	감염병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 이용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상환유예 (전국단위)</td> <td>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유예기간 종료 시 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td> </tr> <tr> <td>이자지원 (감염병특별 관리지역)</td> <td>서민금융진흥원에서 6개월분 이자를 보조</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상환유예 (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유예기간 종료 시 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이자지원 (감염병특별 관리지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6개월분 이자를 보조		
구분	내용							
상환유예 (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유예기간 종료 시 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이자지원 (감염병특별 관리지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6개월분 이자를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 								

① 신용등급 사전조회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 전국민 무료 신용등급 조회(나이스평가정보 www.credit.co.kr) (단, 대출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1

뇌성마비 장애란?

01 뇌성마비의 정의	22
02 뇌성마비의 원인	23
03 뇌성마비의 증상	25
04 뇌성마비의 분류	25
05 뇌성마비의 치료	28
06 뇌성마비장애인과 상호작용 매뉴얼	30

01 뇌성마비장애란?

뇌성마비의 정의¹⁾

-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는 어린 아이들에게 영구적인 운동장애를 남기는 비진행성 질환을 뜻하며, 미성숙한 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장애는 간질 발작과 이차적인 근골격계 문제로 종종 감각, 지각, 인지능력, 의사소통과 행동의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 뇌손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지적장애나 경련, 언어장애, 학습장애, 시력 및 청력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 뇌의 병변, 혹은 손상은 진행하지 않지만 이로 인한 운동과 자세의 이상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유형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뇌성마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뇌성마비아동의 반 이상은 원인을 잘 모르며, 일시적인 운동장애, 진행되는 뇌병변, 지능장애, 척수 이상에 의한 장애는 뇌성마비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뇌성마비=뇌병변장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성마비 또한 뇌병변장애에 포함되는 하나의 장애유형입니다. 이에 성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운동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뇌성마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 뇌성마비를 소아마비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소아마비는 발병 원인에서부터 뇌성마비와 큰 차이가 있는 질환입니다.

1) 정진엽 외4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7 / 정진엽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4 / 일레인 게라리스 외13명, 뇌성마비 아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P2

뇌성마비의 원인²⁾

뇌성마비의 75~80%는 임신 기간(출산 전, 분만 전후, 출산 후 등)동안 발생하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신생아의 뇌손상이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단일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출생 전에 이미 많은 뇌손상을 입어 생기는 것이며, 심지어 만삭에 태어난 아이에게 뇌성마비를 야기할 정도의 뇌손상을 일으킨 원인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산아에서의 뇌성마비의 원인

조산 및 저체중은 뇌성마비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한 신생아를 조산아라고 하며, 뇌성마비의 약 50%가 조산아에서 발생합니다. 조산아의 뇌는 허혈성 및 출혈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뇌실내출혈과 뇌실주위백질 연화증이 쉽게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같은 위험인자에 노출되더라도 뇌성마비가 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조산아에서 뇌성마비는 뇌조직의 미성숙과 자궁내 감염 및 염증반응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에 의하며, 이러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조산아에서 출생 전후 폐 미성숙에 의한 저산소성 환경, 고동도 산소치료, 기계보조환기에 따른 2차 손상이 보다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삭 출산아 뇌성마비의 원인

만삭 출산아는 미숙아에 비해 뇌성마비의 상대적 빈도는 매우 낮지만 대부분의 신생아는 만삭에 태어나기 때문에 50~60%의 뇌성마비 아동은 만삭 출산아이다. 만삭 출산아의 뇌성마비 원인을 임신 시기에 따라 출산 전, 주산기, 출산 후 원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 전 원인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유전적 이상, 선천성 감염, 선천성 뇌병변
 주산기 원인	분만 과정이나 분만 직후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
 출산 후 원인	분만 후 신생아시기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핵황달

2) 정진엽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12-18

쌍둥이 임신(다태 임신)의 뇌성마비의 원인

다태 임신 자체가 뇌성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단태아보다 쌍태아는 5배, 삼태아는 13배 정도 뇌성마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단태아보다 다태아에서 저체중, 조산의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태임신에서 한 쪽 태아가 사망하거나 출산 후 한쪽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아의 뇌성마비 빈도가 현저히 올라갑니다.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을 '분만가사', 또는 '주산기 가사'라고 하는데, 이는 분만 진통 중 태아에 적절한 혈액이나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산기 가사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산과적 상황으로는 태반조기박리(태반이 임신20주 이후 태아분만 전에 일부분 또는 전체가 자궁에서 떨어지는 상태), 전치 태반(태반이 분만 시에 태아가 나오는 길목인 자궁 문을 가리고 있거나 자궁 문에 걸쳐 있는 상태)에 동반된 출혈, 분만 진통 중에 지속되는 태반의 기능 부전 등이 있습니다.

신생아 뇌졸중 혹은 주산기 허혈성 뇌졸중

뇌의 어느 한 부분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 뇌 조직에 산소 등의 공급이 부족해져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의학용어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며, 만삭분만 2300~4000차례 중 1차례 정도의 빈도로 발생합니다.

핵황달

혈액형 부적합으로 인해 적혈구가 파괴되어 그 안에 있던 비결합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중에 늘어나게 되면서 뇌손상까지 일으키고 이로 인해 특징적인 뇌성마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혈액형 부적합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핵황달로 인한 뇌손상은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1) 정진엽 외4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7 / 정진엽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4 / 일레인 게라리스 외13명, 뇌성마비 아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P2

뇌성마비의 증상³⁾

뇌의 운동 신경 부분이 손상되면 뇌성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뇌성마비가 침범한 부위 및 양상,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운동장애를 동반하는데 대표적으로 성장 발육 지연과 보행 및 운동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조화로운 신체운동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 이외에도 감각·인지·의사소통·행동 장애 및 경련성 질환·사시와 같은 안구운동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강의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음식의 섭취가 곤란하고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며, 심한 경우 호흡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장애가 심하거나 지적장애가 심한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뇌손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흔히 간질과 같은 경련성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뇌성마비의 분류⁴⁾

뇌성마비라는 질병을 분류하는 이유는 치료하는 의료진들 간의 정보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예후에 관한 상담·치료 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분류를 통해 뇌성마비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뇌성마비의 분류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뇌성마비는 분류에 따라 다양한 경중도(심한정도)와 예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치료방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으며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이들 분류법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 정진엽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17-25

4) 정진엽 외17명, 알기 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6-31

[생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

경직형(Spastic type)

경직성(spasticity)이란 관절을 빠른 속도로 구부리거나 펴면서 근육의 길이를 늘일 때,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잘 늘어나다가 갑자기 근육이 굳어지면서 잘 늘어나지 않는 현상으로 근육의 긴장성이 증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2/3가 경직성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경직성 및 변형에 대해 물리치료, 석고고정, 바클로펜(baclofen), 보툴리눔독소 주사(botulinum toxin-type A), 선택적 척수 후근 절제술(selective dorsal rhizotomy, SDR), 정형외과적 수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긴장이상형(Dystonic type)

대뇌기저핵(basal ganglia)의 이상이 주된 병변으로 수의운동(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자세 유지 시 사지, 목, 안면 등을 지속적으로 뒤틀거나 꿈틀거리는 불수의운동(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상운동)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의 1/4에 해당하며, 수의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긴장하면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고 수면 시에는 소실됩니다. 근긴장이상형은 경직형에 비해 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동실조형(Ataxic type)

평형감각장애와 협동운동장애 등 소뇌의 기능장애로 오는 증상으로 뇌성마비 인의 1% 미만이며, 근긴장이상형에서 나타나는 불수의운동은 없고, 보행 시 잘 나타납니다. 운동실조형은 경직형 사지마비와 구별해야하는데, 운동실조형은 성장함에 따라 증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혼합형(Mixed type)

상기 2종류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혼합형이 10% 정도 있으며, 뇌성마비 아동의 10%정도가 혼합형으로 대부분 경직형에 준하여 치료를 시행합니다.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편마비(Hemiplegia)

편마비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약 30%를 차지하며, 같은 쪽의 상지와 하지가 이환되는 형태입니다. 마비 증상은 몸통 근처 부위보다는 몸통과 먼 쪽 부위에서 더 심한 양상을 보이며, 상지에서는 50~60%의 감각 결손이 있고 주로 고유감각(위치감각, 압박감각, 운동감각, 진동감각 및 심부지각의 총칭) 장애가 나타납니다. 또한 집중력 결여의 빈도가 높고, 사시나 반맹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보다 시기는 늦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뇌성마비아동이 보행이 가능하며, 대부분 일반 지능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보편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측마비(Diplegia)

양측마비는 주로 하지를 침범하며, 양측이 대칭적입니다. 상지의 이환도 있으나 하지에 비해서 증상이 경한 양상을 보이며, 아무리 경한 증상이라도 상지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양측마비는 백질연화증(미숙아의 뇌실주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병리소견으로, 산소 결핍으로 뇌실 주변의 백질부위가 괴사된 것)의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지마비(Quadriplegia)

양측 상지와 하지 모두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로,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중 가장 심한 형태입니다. 저산소, 혹은 무산소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경련성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약 75%의 뇌성마비아동에게서 지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침흘림, 연하·발음장애 등이 동반되며, 2차적으로 영양결핍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은 힘들며, 성장기간 중 척추 측만증 및 고관절 탈구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 깊은 관찰과 시기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성마비의 치료⁵⁾

물리치료(Physical Therapy)

물리치료란, 운동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치료를 통칭하는 용어로, 뇌성마비 아동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에게 물리치료는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보이는 근 긴장의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며, 비정상적인 반사작용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자세반응을 경험하게 하여 머리와 몸통의 정상적인 발달순서를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경직형 아동은 관절가동범위를 확대하여 구축의 위험성을 줄이고, 무정위형 아동은 근위부를 안정시켜 정중선 유지 및 대칭성 자세 유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균형과 수의적인 움직임을 증진시켜 아동이 스스로 자세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는 주로 상지의 동작에 초점을 맞추며, 미세동작 호전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됩니다. 뇌성마비 아동이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손 협응 능력, 적절한 자세,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고, 물건을 쥐거나 조작하기에 앞서 무엇인가가 손에 닿았을 때 느낌이 즐거워야 합니다. 작업치료를 통해 이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학습, 놀이 등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킵니다.

언어치료(Speech language Therapy)

뇌성마비 아동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호흡에서 조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 문제를 보이면서 전체 아동의 75~85%가 언어장애를 보입니다(Love&Webb,2001). 뇌성마비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현되는 장애이므로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으나 다분야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도모하며, 주로 자세, 호흡, 발성, 조음 등의 치료가 진행됩니다.

스노젤렌치료(Snoezelen Therapy, 심리안정치료)

스노젤렌은 학문적으로 “콩콩거리며 냄새 맡는 것”과 “구벽구벽 조는 것”이라는 뜻의 네덜란드어를 합성한 것으로, 부드러운 음악이 들리고 은은하면서 매혹적인 빛이 나는 공간 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치료활동입니다. 스노젤렌치료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격리수용, 보호, 관리의 관점에서 변화하여 그들도 만나는 사람, 접하게 되는 사물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스노젤렌치료는 뇌손상 환자 및 치매환자, 만성 통증 환자 등 심리적 이완이 요구되는 성인 및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정진엽 외31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35 / 김향희, 신경언어장애, 시그마프레스 P398

보바스치료(Bobath Therapy,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의 기본개념은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를 관절운동, 자세잡기, 정상 운동패턴 촉진 등을 통해 정상화시키고, 비정상적 원시반사를 억제하며 자동반응을 촉진함으로써 운동 양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는 몸통 부위(근위부)에 있는 '키 포인트 조절점'에서 시작되며, 키 포인트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머리, 목, 척추, 어깨나 골반 등에 위치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키 포인트를 바탕으로 치료하는데, 조절점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은 각각 개인별로 다릅니다.

보이타치료(Vojta Therapy)

신체의 일정부위를 자극함으로써 고유감각 자극을 주어 반사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상적 이동 동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극을 통해서 반사적 뒤집기(reflex turning)와 반사적 기기(reflex creeping)를 유발하는 방법을 쓰며, 주로 1세 이하 영아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경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악화시킬 수 있고 치료 과정 자체도 뇌성마비 아동에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통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

신체와 환경의 여러 감각 정보를 뇌에서 조절하는 과정을 감각통합이라 하며, 이를 통해서 신체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치료법입니다. 전정(vestibular), 위치(proprioceptive) 및 촉각(tactile)이 특히 학습과 운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감각의 통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습, 행동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감각 통합치료의 목적은 특정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의 인지, 기억, 운동 계획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학습장애 및 자폐증 치료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뇌성마비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치료(Aquatic Therapy)

수치료는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체중 부하가 적은 상태에서 자세 유지, 관절 움직임, 유산소 운동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로 특히 재활의학 분야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승마치료(Hippo Therapy)

1950년대에 소아마비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비교적 최근 뇌성마비 아동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승마를 통해 근 긴장도, 균형, 몸통 조절 등을 호전시킬 수 있고, 치료 매개 동물인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도움도 된다는 가정 하에 시작된 치료입니다.

연하치료(Deglutition Therapy)

연하치료란, 씹고 삼키는 능력의 손상으로 연하곤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식이조절 및 자제 조절을 통한 치료적 접근방법입니다. 삼키는 음식은 구강에서 위까지 이동시키기 위하여 50가지 이상의 신경 및 근육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만약 신경이나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연하에 문제가 생기면 효과적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며,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아예 기도를 막아서 질식이 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삼킴 시에는 액체나 음식물이 기도 혹은 폐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호흡과 잘 조화를 이루게 돕습니다.

심리치료(Psychology Therapy)

심리치료란 심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치료법으로 종류는 다양하며 보편적으로 미술, 놀이, 음악치료 등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사회경험의 폭이 제한되며, 이것이 아동시기 발달 및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2차적 손상인 통증으로 인한 강박증·예민성·불안·우울 등 부정적 감정 상태 및 사회·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성마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매뉴얼

01. 의사소통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주의 깊게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 뇌성마비장애인은 안면근육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지가 흔들리며 경직되는 모습, 어눌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지능이 낮으리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실제로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주의해주세요.
- 언어장애가 있는 뇌성마비장애인은 긴장하거나 당황하게 되면 발음에 곤란을 느끼고, 목, 사지, 안면근육의 경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 만약 뇌성마비장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반복해서 다시 물어봐도 괜찮으니 천천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 소리 내어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 휴대폰 문자나 필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으며 장시간 대화가 필요할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및 간단하게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아 기본적인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판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02.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AAC)

노우테크(No-tech)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전자적 요소가 없이 교사나 보호자가 직접 상징을 출력하고 오려서 붙여 만드는 의사소통 책 또는 의사소통 판을 의미



로우테크(Low-tech)

음성을 녹음해서 사용하는 단순한 전자 의사소통 도구로, 녹음한 음성을 저장하였다가 재생하여 사용하며, 종류에 따라 저장시간이 15초에서 300초까지 다양하고 단어나 문장 재생이 가능



하이테크(High-te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단독 도구부터 어플까지 다양하며,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을 합성하여 출력가능. 최근 스마트기기 발달로 어플형 프로그램이 출시



어플(나의 AAC)

안드로이드 / IOS에서 모두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통판으로 말하기, 상징으로 말하기, 문자로 말하기, 이야기 만들기로 구성



03. 이동지원 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주세요.

-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장애인을 도울 때에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갑작스런 움직임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근긴장도가 올라가 휠체어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출발하거나 또는 정지 등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 시 안내가 필요합니다.
- 보행이 가능하나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보이는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 등에서는 부축이 필요하지 확인 후 도움을 드립니다.
- 수동휠체어를 타는 뇌성마비장애인은 스스로 바퀴를 밀어 이동하지만, 간혹 고르지 못한 바닥·경사로·높낮이의 차이가 있거나 틈이 있는 곳에서는 스스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유의사항

- 뇌성마비장애인은 근육의 강직으로 인한 발달지연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외관 상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성마비장애인을 대할 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주세요.
- 과잉보호나 과잉염려, 과도한 친절은 뇌성마비장애인에게 동정이나 참견이 될 수 있으니 선불리 도움을 주기보다는 기다리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한 후 행동합니다.
- 휠체어 등 보조기기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신체 일부라 생각하고 붙잡거나 기대지 말아야합니다.
- 다과 및 음료수 접대 시, 포크나 빨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사용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뇌성마비장애인의 이동수단이 되는 보조기기는 대부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좁은 문이나 협소한 구간보다는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2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01 경제적 지원	36
02 의료·재활·건강 지원	50
03 임신·양육·교육 지원	69
04 일상생활 지원	93
05 주거 지원	110
06 취업 지원	126
07 보조기기 지원	136
08 법률 지원	142
09 문화여가 지원	147

01 경제적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3.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
- 통합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4.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 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가능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 결정

①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3,177,577

②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 선정제외
 - 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2,000cc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③ 부양의무자 기준

-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 8월부터 시행)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구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749,174	5,983,960	6,862,557	7,741,154	8,619,751	9,498,348	10,381,695
재산기준	6억원						



2. 내용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

※ 근로능력가구는 6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 결과를 적용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8세미만, 65세이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자 등

3.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3만 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 가 급 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만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3급 중복)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복수급 불가)

장애수당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1. 대상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0년 1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최고 27만 4,760원 • 기초급여 25만 4,76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 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 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 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2. 내용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3. 방법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283-0445, www.adoncda.or.kr)

희망키움통장(Ⅰ, Ⅱ)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Ⅰ 유형 (기초 수급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4인 기준 113만 9,802원)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Ⅱ 유형 (차상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Ⅱ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 Ⅰ 유형 :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5만 원 = 월 45만 원 → 3년 후 약 1,695만 원	
• Ⅱ 유형 :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월 20만 원 → 3년 후 약 720만 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내일키움통장

1.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2. 내용

매월 5만/10만/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평균 2,232만 원, 최대 2,340만 원 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희망키움통장

1. 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2.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소득 88만 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9만 6,000원 = 월 49만 6,000원 → 3년 간 약 1,785만 원 월 소득 116만 원 이상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만 3,000원 = 월 62만 3,000원 → 3년 간 약 2,242만 원
------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19.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019년 기준)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 (원칙)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9월 지급
-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1. 대상

- 만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 9월 지급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자주 하는 질문

소득 가구에도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서울시)

1. 대상

-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1981.01.01~2005.12.31)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인 가구

2. 내용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을 위해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참가자
저축액과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선택)①	10만원	15만원	20만원	본인 저축액은 가입 당시 선택
매칭지원금②	15만원	15만원	15만원	매칭 지원금은 서울시 지원 (정액)
월 적립금(①+②)	25만원	30만원	35만원	매월 적립 시 (총36회)
만기적립금(3년)	900만원+ 이자	1,080만원+ 이자	1,260만원+ 이자	

3. 방법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4. 문의

다산콜센터(☎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02 의료·재활·건강 지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대상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2. 내용

검사 실비 지원, 최대 지원액 10만원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 신규 등록장애인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2. 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3. 방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6개월 연장)	5%
중증외상	30일	5%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중증치매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2.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의료비 지원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구분	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7만 원 한도)



구분	내용
보청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37주 미만 출생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

2. 내용

공단에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60개월까지), 종별,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2.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8만 6,647원, 지역 30만 8,952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1. 대상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9만 2,080원, 지역 19만 9,256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2. 내용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2.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을 하세요.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소득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 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직장가입자 16만 5,070원, 지역가입자 16만 6,370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10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200만 원 초과 시 지원

2. 내용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6대 중증질환*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 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3. 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 (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구분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건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2.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함)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 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 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씩 지원
-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3.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지정된 관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1. 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내용

조기적응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통증관리, 만성질환 등), 재활훈련서비스(재활운동교육, 2차장애예방교육 등), 자원연계서비스(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보건소

장애친화 건강검진

1. 대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이용 가능

※ 다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는 장애정도 중증(중전1~3급)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꼭 지참해야 가능

2. 내용

-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
-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3. 방법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및 변경이 가능하며, 검진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예약 및 확인 후 방문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www.nrc.go.kr)

알려드립니다

2020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황

※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 예정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장애친화지원서비스
1	서울	서울의료원	02-2276-7000	완료
2	인천	인천의료원	032-580-6023~4	준비중
3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787~8	준비중
4	대전	대청병원	1899-6075	준비중
5	강원	원주의료원	033-760-4586	완료
6	전북	대자인병원	063-240-2009	준비중
7	경북	안동의료원	054-850-6080	완료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054-468-9551	준비중
8	경남	조은금강병원	055-330-0300	준비중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1570	준비중
		진주고려병원	055-751-2412~3	준비중
		마산의료원	055-249-1234~5	완료
9	부산	부산의료원	051-607-2061	준비중
		부산성모병원	051-933-7651	완료
10	제주	서귀포의료원	064-730-3020	준비중
		중앙병원	064-786-7282	준비중

03 임신·양육·교육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1.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신부
 - * 3인 가구 기준 월 6,96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해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3.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4.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2.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3. 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1.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 원(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필요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2. 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00만 원)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분만예정일, 유산진단일) 이후 1년까지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3.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어플)이나 전화로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20년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강원도(철원군, 양구군), 경북 영천시는 2017~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지역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 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3.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79만 9,339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3.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2. 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3.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변경 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추가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1.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차) 4-6개월	(2차) 9-12개월	(3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건강검진	○	○	○	○	○	○	○
구강검진	-	-	○ (18~29)	-	○ (42~53)	○ (54~65)	-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5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 검진기관 방문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2. 내용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47만 8,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9만 2,080원, 지역 19만 9,256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2. 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9,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생후 3개월 ~ 만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9,890원,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만 1,860원, 질병 완치 시까지)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만 2,000원)	7,912원	1,978원	1만 81원*	1,779원	8,895원*	2,965원
나형	120% 이하 (569만 9,000원)	5,934원	3,956원	6,523원*	5,337원	5,930원	5,930원
다형	150% 이하 (712만 4,000원)	1,484원	8,406원	5,930원	5,930원	5,930원	5,930원
라형	150% 초과	-	9,890원	5,930원	5,930원	5,930원	5,93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A형 - '가, 나' / B형 - '가')정부지원금은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적용 선택 시 금액임. 차감 미적용 선택 시는 5,930원 지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시간제서비스(연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							
		일반형(시간당 9,890원)				종합형(시간당 1만 2,860원)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56만 2,000원)	8,407원	1,483원	7,418원	2,472원	8,407원	4,453원	7,418원	5,442원
나형	120%이하 (569만 9,000원)	5,440원	4,450원	1,978원	7,912원	5,440원	7,420원	1,978원	1만 882원
다형	150%이하 (712만 4,000원)	1,484원	8,406원	1,484원	8,406원	1,484원	1만 1,376원	1,484원	1만 1,376원
라형	150%초과	-	9,890원	-	9,890원	-	1만 2,860원	-	1만 2,860원

3. 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대표번호 ☎1577-2514)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만 1,000원)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55만 5,830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2인 기준 179만 5,188원) 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3.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급식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2. 내용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25만 원~45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 및 1:1 멘토링, 교육캠프(중3, 고2), 진로컨설팅(고1)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대학생은 별도 선발 없이 계속 장학생 중 지원

3. 방법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한 학생에 대해 서류 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4. 문의

소속 학교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고교학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2.3학년은 제외. 단,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의 2.3학년은 지원 가능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55만 5,830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내용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대학생 우선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대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 지원인력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교육 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9887)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만 4,000원	7만 2,000원	-	-
중학생	21만 2,000원	8만 3,000원	-	-
고등학생	33만 9,200원	8만 3,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으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3.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 자료 및 동영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EBS 방송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4.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장애인 정보화교육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동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3. 방법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상담실(☎1588-2670)을 통한 전화 신청
-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www.it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www.itstudy.or.kr)



평생교육바우처

1.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4인 기준 308만 6,963원)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1인 기준 210만 8,632원)

2. 내용

지원인원 8,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불가

사용가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 학력취득 목적 외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매치업, 지자체 평생학습관 및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
사용가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를 통해 사용기관 확인 가능)

3.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방문해 신청·접수 절차를 도움 받을 수 있음

4.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란?

-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게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내용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 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04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 기관)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② 이동지원 분야(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활동지원

1.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1만 원 ~ 최대 648만 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27만 원), 자립준비(27만 원), 보호자 일시 부재(108만 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서울시)

1. 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준1~3급) 장애인

-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가능
-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가능
-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신규 이용기준에 준하는 경우 가능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확인원) 휠체어 이용시 이용가능
 - ※ 만13세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 제외

2. 내용

중증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대중교통

- 운행차량
리프트, 슬로프 장착 차량(카니발, 스타렉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미니버스
- 운행시간
24시간 체계 : 주간 07:00~22:00(15시간) / 야간 22:00~익일 07:00(9시간)
- 운행지역
- 서울시 전역(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인접12개시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진료 예약증 확인(또는 접수확인 증빙서류), 입원예정서(입원확인 증빙서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전 콜센터 승인 필요
 - ※ 당일 진료시 하차 후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 및 확인 되어야 다음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미제출시 다음회 콜신청접수 불가
 - 출발지는 서울시내여야 이용이 가능(서울 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5km 까지 1,500원
 - 추가요금 : 5km 초과 ~ 10km 이내 km당 280원, 10km 초과 시 km당 70원
 - ※ 시간·지역 할증없음. / 100원미만 절사

3. 방법

전화, 문자, 인터넷, 모바일로 접수

4. 문의

-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 인터넷콜센터 누리집(calltaxi.sisul.or.kr) / 문의전화(☎1588-4388)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1. 대상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알려드립니다

면허조건이란?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면허조건(E,F,G,H,I)란?

- E: 청각장애표시 및 블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2. 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3.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자주 하는 질문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의 조건 란에 E,F,G,H,I 중 하나 이상이 표시되어 있으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 조건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운전인지능력평가 후 합격 유무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운전면허증에 조건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운전교육 가능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 됨에 따라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대상이 장애등급에서 운전면허증에 조건부여 유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9) 교육대상: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1~4급
- (2020) 교육대상: 운전면허증에 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 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126)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대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를 보조하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만 11세~만 18세 여성 청소년

※ 2002년~2009년생(2020년 기준)

2. 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 1,000원, 연 최대 13만 2,000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카드사별가맹점

카드사	가맹점	
	온라인	매장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VIC마트, 농협하나로마트

3.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4.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국민행복카드발급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1. 대상

신청일 기준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 이상~만44세 이하의 뇌병변 장애인으로 자격기준 내 대상자

2. 내용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패드) 구입비의 월 50% 지원(최대 월 5만원 한도)

3. 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하여 거주지 인근 수행기관 및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기관)에 상시 신청

※ 대상자 선정 심의 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기관)에서 개별통보

※ 수행기관 - 서울 내 장애인복지관 24곳(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확인)

• 신청서류

- ①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③ 검사결과서(수정바텔지수-MBI,K-MBI/일상생활동작지수-FMI중 택1)가 첨부된 의사진단서 1부.
(2019.01.01.이후 발급서류)
- ④ 복지카드사본 앞면, 뒷면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 ⑤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0일 전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
- ⑥ 통장사본 1부(등본상 가족관계 증빙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4.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070-4242-5997, 5998 / together-seoul.org)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2. 내용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1.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2.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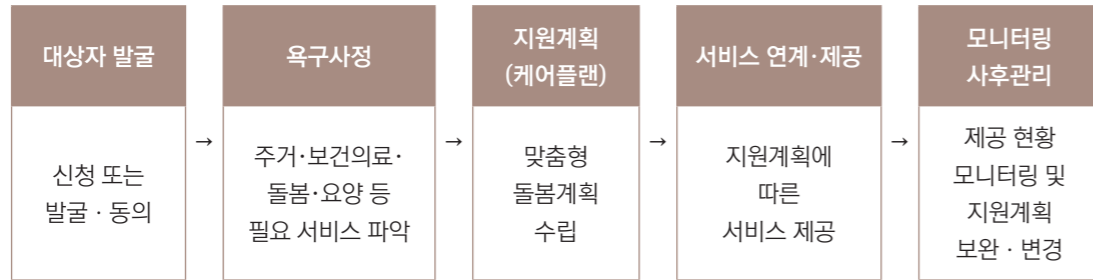
병원·시설보다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제공기반 구축

※ 각 지자체별로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 보건의료, 방문건강관리, 돌봄, 요양 및 식사·이동 지원 등 서비스 연계·제공



3. 방법

- 신청기관 : 16개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등
- * 지역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다양한 모형 개발·검증을 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16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우선 제공 중('19.6~), 향후 확대 예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초과 100%(4인 기준 474만 9,174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200만 원 이내 (자동차 구입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보증 상환
보증 대출	2,000만 원 이내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 (보증인 1인당 1,000만 원 이내)	
담보 대출	5,000만 원 이내	담보범위 내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용자추천 통지→금융기관 (KB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용자신청

※ 금융기관(KB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서울시 최종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1. 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등록자 중(최근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성인기 최종증 뇌성마비장애인
- 최종증 장애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소외된 뇌성마비장애인
 - ※ 현재 정기적으로 시설입소 중이거나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자는 미대상

2. 내용

- 주 4~5회 이용, 이용료(수급자 면제, 차상위50%감면) 개별부담, 식대 별도
- 돌봄서비스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제공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2-2135-3629)

알려드립니다

2020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1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4~8
2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3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4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2-932-4412, 4415
5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1. 대상

-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300점(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수급자로, 주 보호자가 없는 독거·취약가구로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 ※ 인정점수 380점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치구 직권으로 대상자 선정 가능
 - ※ 단,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는 제외



2. 내용

-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시행
- 대소변처리, 배뇨도움(벨라톤 사용), 건강상태 체크, 체위변경, 응급상황 확인 등
- 방문시간 : 22시~익일 6시, 평균 2~3회 방문(1회 20~30분)
 - ※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과 외출 시 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서비스는 배제
 - ※ 정맥약품 투여, 석션 등 의사 지시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 제외

3.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알려드립니다

2020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수행기관

번호	지역구	기관명	연락처
1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02-451-6000
2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5
3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4	관악구	사단법인 굿하트	02-3481-7090
5	광진구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4-8119
6	구로구	구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66-0233
7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62
8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9	도봉구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10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9-5603
11	동작구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00
12	영등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13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14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63-3042
15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88-3119
16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02-2290-3143
17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02-923-4555
18	송파구	송파구 방이복지관	02-3432-0477
19	양천구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02-2698-9191
20	용산구	용산장애인복지관	02-707-1970
21	은평구	사단법인 초록	02-389-7708
22	종로구	사회적협동조합 종로돌봄센터	02-3673-3966
23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1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교통비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교통비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 ☎1544-77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 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 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 초고속인터넷, 현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최대 2만 1,5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각종 공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요금 감면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생계급여·의료급여</td> <td>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td> </tr> <tr> <td>주거급여·교육급여</td> <td>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05 주거 지원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LH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35만 8,439원)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자산 :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35만 8,439원) 이하
- 총자산 :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8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120%)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50만 1,518원, 100% 562만 6,897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 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622만 6,342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무기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⑥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⑥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50% 281만 3,449원, 70% 393만 8,828원, 90% 506만 4,207원, 100% 562만 6,897원, 120% 675만 2,276원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구분	지원내용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1순위 시세 30% 이하, 2순위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281만 3,449원, 70% 393만 8,828원, 90% 506만 4,207원, 100% 562만 6,897원, 120% 675만 2,276원

2.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5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 원(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구분	지원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I	<p>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p>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2,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 원, 월임대료 19만 원 수준</p>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p>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p>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p>
다자녀 전세임대	<p>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p>만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도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p> <p>※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p>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 다자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LH마이홈(☎1600-1004)
- 지방도시공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3.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4. 문의

LH(☎1600-1004)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1~2.7%,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원(수도권 2억원)
 - ※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8,000만원(수도권 2억 2,000만 원)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소득이 존재해야함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23)

에너지바우처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5.12.31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2015.1.1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① 보장시설 수급자
 -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7,000원	1만 원	1만 5,000원	•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8만 8,000원	12만 4,000원	15만 2,0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	9만 5,000원	13만 4,000원	16만 7,0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5월~12월)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 공급사 등) → 사용(여름 바우처 7월~9월, 겨울 바우처 10월~차년도 4월) → 정산(전담기관)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환경성질환 소아 청소년 및 어르신 거주가구

2.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환경성질환 원인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무료진료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자체(시군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19)
- 전국 14개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

자주 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해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을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6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5~8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 7~11월
 -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3% 절감 효과(283kWh/m² → 217kWh/m²)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창호일체형 에어컨 등 냉방물품

06 취업 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I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69세 장애인
II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이하의 저소득층 만 18~69세 장애인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2.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전문상담(최소 2회 이상 실시)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 추가 지급
▼		
(2단계)	직업능력 향상	
12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등 	훈련참여수당 일 1만 8,000원 월 최대 28만 4,000원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3개월 ~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직무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 면접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12개월 근속시)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II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총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79만 5,350원 12월: 167만 9,35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89만 7,660원 12월: 85만 1,270원
복지 일자리	미취업 등록 장애인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48만 1,04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14만 5,700원 12월: 107만 5,64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12만 5,290원 12월: 105만 6,570원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활근로

1. 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을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취업장려금(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 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7,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 면접조사 :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 신체능력 :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 사회심리기능 :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 작업기능 :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 의료 :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세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형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3개소)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 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또는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이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 지급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훈련기관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 1,400시간(12개월) 및 2,7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 직업 훈련	직업재활센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월 10만 원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6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대상

만 18세 ~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2. 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1.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인 근로장애인

2. 내용

월 최대 30만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전환지원
프로그램 제공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근로지원인 지원

1. 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애인 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3. 방법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신청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서식자료실 이용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07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1.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내용

31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심장 장애인	육창 예방용 방식 및 커버, 외상용 육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장애인용의복, 전동침대
지적·뇌병변·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4. 문의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만나보세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대상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2.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3. 방법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 → 개인 부담금 납부 → 기계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4. 문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www.at4u.or.kr)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 ①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 ②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 ③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

보조기기 관련 공적 자원 및 문의처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지급품목	신청기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소득수준 : 수급자 및 차상위	보조기기 32품목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	9종 65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구입품목 11종, 대여품목 8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장애인(개인부담 20%) 수급자 및 차상위 (개인부담 10%) 국가유공자	시각 49종, 지체·뇌병변 18종, 언어 31종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가입자 산업재해 장애인	보조기기 28종, 산재보험 급여품목 52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보조기기 27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영역별 보조기기 안내

영역	사진	설명
자세유지 보조기기		올바른 자세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 종 벨트 및 서포트 장치를 통해 앉기, 서기, 눕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제품 자세보조용구, 기립훈련기, 피더시트 등
이동 보조기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제품 휠체어, 워커, 전동스쿠터 등
일상생활 보조기기		장애인이 식사, 용변, 목욕, 의복착용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보호자가 보조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보조기기 제품 목욕의자, 이동용 변기, 식사보조도구, IoT기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제품 gotalk, 마이토키, 키즈보이스, 어플(스마트AAC, 진소리) 등



영역	사진	설명
작업 및 학습 보조기기		장애인의 직업,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제품 작업테이블, 필기보조도구, 페이지터너 등
감각 보조기기		시·청각 장애인이 컴퓨터, 독서 및 일상생활에서 정보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제품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 S/W, 음성증폭기 등
여가 보조기기		장애인의 여가, 레포츠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제품 특수자전거, 스포츠용 휠체어, 카드혼합기, 해변용휠체어 등
IT 접근 보조기기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우세한 신체부위를 활용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제품 빅키보드, 조우스, 롤러조이스틱, 안구마우스 등

08 법률 지원



무료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93만 6,000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포함)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변호사 비용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무료 법률상담

1.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2. 내용

- 면접상담, 사이버(인터넷), 전화 상담
- 이동법률상담차량(버스) 운영

* 차량 방문일정은 공단 누리집(<http://www.klac.or.kr>)에서 확인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www.klac.or.kr>



법률홈닥터

1.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2.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

3. 방법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lawhomedoctor.moj.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753, 3824

법률구조 제도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93만 6,000원)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712만 4,000원)이하 농·어업인

2. 내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무료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유료	유료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	무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료	유료
	전시납북자가족	무료	무료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영세담배소매인	무료	무료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부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예술인		
	재도전기업인		
	국내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신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한부모가족(양육,인지)	무료	무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150%이하	농업인·어업인	무료	무료
소득기준 예외	차상위계층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불법사금융피해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93만 6,000원)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2. 내용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3. 방법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 관할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함

4.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https://resu.klac.or.kr>)
-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71), 대구(☎053-756-1801), 광주(☎062-224-7806), 대전(☎042-721-7000), 울산(☎052-708-0212), 수원(☎031-8019-7577)

09 문화여가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9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서 카드 재충전 신청
- ※ 만 14세 이상, '16년 이후 발급된 카드(유효기간 **/21~24)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경우만 가능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4.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알려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12.31)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명의자 사망 시 카드사용 불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가능합니다.

(1회 100원 이상, 10만 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재분리 되지 않습니다.

주요 가맹점 할인혜택 제공은 카드당 할인매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세~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 12세~49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2. 내용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 -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확인 가능

3. 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4.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dvoucher.kspo.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참고



자주 하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매년 12월 전국 동시 접수기간을 통해 신청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접수기간인 12월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동시 접수기간' 이후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20년 3월부터 운영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결과는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누리집(MY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신청 가능여부는 시군구청의 예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거주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해주세요.

어느 시설에서든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등록된 시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거주지역으로 조회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사에서 카드명義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본인 확인(개인정보)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전용카드 발급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강좌를 선택해 온라인 결제를 완료하면 시설로 수강료가 직접 입금됩니다. 시설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수강료는 언제 결제해야 하나요?

- 강좌를 수강하는 해당 월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수강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미결제분은 소멸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이용권 신청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접수
- 카드발급 신청 : 이용권서비스 선정자에 한함
 - 기 보유 신한은행의 신용/체크카드에 이용권 지원금 충전 지급
 - * 신한 신용/체크카드 미소지자는 신한카드 누리집(<http://www.shinancard.com>), 콜센터(1661-8599), 은행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규 발급 필요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0년 10월 31일(토)

4.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매수가 확대 되었습니다.

(‘19) 3만 5,000명 ▶ (‘20) 4만 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선정 방식 변경되었습니다.

(‘19) 무작위 추첨 ▶ (‘20)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사용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9) 12월 31일까지 사용 ▶ (‘20) 10월 31일까지 사용



관광정보 안내

1. 장애인 접근성 픽토그램

1. 단독 접근 가능 	2. 장애인 활동 보조 필요 어려움 약간어려움 쉬움	3. 단차없음 	4. 청각장애인 접근성
5. 시각장애인 접근성 	6. 저상버스 접근가능 	7. 장애인 전용리프트 	8. 장애인 화장실
9. 승강기 유, 무 	10. 장애인 전용 주차장 	11. 일반 주차장 	12. 수동 휠체어 대여
13. 전동 휠체어 대여 	14. 장애인 전용 매표소 	15. 장애인 전용 객실 유, 무 	16. 테이블 비치 유, 무



2. 장애인 여행 정보 사이트

구 분	사 이 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정보	korean.visitkorea.or.kr
서울시복지포털 - 장애인복지(관광정보)	wis.seoul.go.kr
서울관광재단 - 서울다누림관광 ☎1670-0880	www.seouldanurim.net
경주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 ☎054-745-2255	www.jangtour.org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053-633-8001 / 053-621-6160	www.wheeltour.or.kr
휠체어와 함께 가는 부산관광 ☎051-783-8308	www.wheelbusan.or.kr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 ☎064-740-6000	www.visitjeju.net

3. 장애인 여행 관련 여행사

구 분	사 이 트	연락처
유니버설디자인투어	www.universaldesigntour.com	02-736-7047
나눔여행사	www.nanumtour.kr	02-599-5411
어뮤즈트래블	www.amusetravel.com	02-719-6811~5
곰두리여행	www.gomduritour.com	02-6383-1000
한벗투어	www.hanbeot.org	02-702-1515
모두를 위한 관광	www.tourforall.net	031-978-0755
두리함께(제주도)	www.jejudoori.com	064-742-0078



스포츠활동

1. 장애인체육 경기종목

골볼, 농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수영, 승마, 사이클,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배구, 축구, 탁구, 볼링, 휠체어러비,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태권도, 카누, 트라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 노르딕스키, 휠체어컬링, 스노보드 등

2. 주요 스포츠 종목

보치아

그리스의 공 던지기 경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1987년 제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보치아 개최되었으며, 한국뇌성마비복지회의 주최로 제1회 전국뇌성마비인 보치아경기대회가 개최되었음. 개인전 경기와 2인조 경기는 4엔드, 단체전은 6엔드로 이루어지며, 개인 경기 선수는 3번과 4번 투구 구역에서 경기하고 단체 경기는 1, 3, 5번(홈 사이드), 2, 4, 6번(어웨이 사이드)까지 던지기 구역을 사용하여 경기함. 선수들은 공을 경기장 안으로 던지거나 굴리거나 발로 차서 보냄. 6개의 빨간색 공과 6개의 파란색 공을 가지고 각 선수가 매 엔드마다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대하여 점수를 부가하며 마지막 엔드에 점수를 합산하여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함.

※ 2020 보치아 가이드북 문의 : 한국뇌성마비복지회(☎02-933-9478, www.kscp.net)

※ 문의 :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02-930-8180, www.koreaboccia.koreanpc.kr)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 축구

축구경기는 유형별로 5인제 시각장애인,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 11인제 지적장애인, 11인제 청각장애인 부분으로 실시함.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 축구는 국제 축구 평의회(IFAB)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각 팀은 골키퍼를 포함하여 7명의 선수로 구성됨. 축구경기는 FT1, FT2, FT3등급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으며, 각 경기당 최대 3명~5명까지 선수교체가 가능함. 각 팀은 경기시간 동안에 반드시 FT1 선수를 최소 1명 이상 출전시켜야 하며, FT3 선수는 최대 1명만 출전 가능함. 경기는 전·후반 30분씩이며 전·후반 사이의 휴식시간은 15분 이내임.

※ 문의 : 대한장애인축구협회(☎02-735-5851~3, www.kofad.koreanpc.kr)



파크골프

파크골프의 어원은 Park(공원) + Golf(골프) = Park Golf(커뮤니케이션 스포츠)의 의미임. 즉, 공원 개념에 골프의 게임요소를 합쳐 적은 부지에서 '장애인과 어린아이부터 노인, 3세대 가족, 연인, 직장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임. 파크골프는 티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를 1홀이라하고 9홀이 하프, 18홀이 1라운드로 이루어짐. 1홀의 거리는 20~100m이고, 파는 3~5타로 설정되어짐. 코스에는 Fairway, 벙커, 러프, 그리고 플레이를 금지하는 OB지역이 있음. 룰을 위반한 경우 2타를 더 가산하는 페널티가 부여되며, 모두 2타 벌칙이 있음. 1라운드는 18홀로 스트록 플레이와 매치 플레이가 일반적임. 4인 1조로 진행되며, 18홀 기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됨.

※ 문의 : 대한장애인골프협회(☎070-7712-6700~3, www.kdpga.koreanpc.kr)



3

시설안내

01 이용시설	158
02 생활시설	168
03 직업시설	174
04 재활병원	176
05 교육기관	181

01 이용시설



장애인 복지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직업지원,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문의

-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내 회원기관 참조 (www.hinet.or.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남구	강남세움복지관	02-2184-8700	종합
2	강남구	강남장애인복지관	02-445-8006	종합
3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02-451-6000	종합
4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02-3411-9581~3	종합
5	강동구	서울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0-5700~2	종합
6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4~8	종합
7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02-2662-3491~4	뇌성마비
8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02-3665-3831	종합
9	관악구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02-877-0750	종합
10	광진구	정립회관	02-446-1237	지체
11	구로구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02-2611-1711	종합
12	구로구	성프란시스교장애인종합복지관	02-830-6500	종합
13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02-6912-8000	종합
14	노원구	성민복지관	02-931-7970~2	종합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5	노원구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02-935-6375~6	지체
16	노원구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2092-1700	종합
17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02-932-4412/4415	뇌성마비
18	도봉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02-6952-1777	종합
19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02-2244-3100	종합
20	동대문구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927-0063	종합
21	동작구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29-7100	종합
22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종합
23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00	종합
24	서초구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02-2055-0909	종합
25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02-2290-3100	종합
26	성북구	성북장애인복지관	02-915-9200	종합
27	송파구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02-431-8881	종합
28	송파구	송파구방이복지관	02-3432-0477	지체
29	양천구	양천해누리복지관	02-2061-2500	종합
30	영등포구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02-3667-7979	종합
31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02-707-1970	종합
32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종합
33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02-6395-7070	종합
34	중구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02-2235-8630	종합
35	중랑구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1	종합



보조기기센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와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절한 보조공학서비스 제공

문의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강동구	서울시 동남보조기기센터	02-440-5891~5
2	서울 강북구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3	서울 강서구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02-2662-3495
4	서울 노원구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070-4258-7444,7257
5	서울 마포구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	02-6070-9264~9
6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89
7	인천 계양구	인천광역시자세유지지구센터	032-540-8988
8	경기 수원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031-295-7363
9	경기 의정부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031-852-7363



자립생활센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동료상담, 정보제공,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 이동서비스, 주거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내 회원기관 참조(www.koil.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9-3766
2	강남구	Good Job자립생활센터	02-518-2197
3	강동구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2-9664
4	강동구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85-0546
5	강북구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80-5264
6	강북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08-7776
7	강서구	강서길라잡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662-0946
8	강서구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64-0896
9	강서구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401-0874
10	강서구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5-0420
11	강서구	꿈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91-2692
12	강서구	강서송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398-1007
13	관악구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77-0293
14	관악구	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42-3773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5	관악구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78-2031
16	광진구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348-8915
17	광진구	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4-4399
18	광진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437-2092
19	광진구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67-5004
20	구로구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57-9501
21	구로구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16-3391
22	구로구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66-0233
23	금천구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035-4340~1
24	노원구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02-930-8212
25	도봉구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5-2887
26	도봉구	도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93-6300
27	도봉구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5-1551
28	도봉구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5-0397
29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59-5603
30	동대문구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21-4541
31	동대문구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66-2017
32	동작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12-2536
33	동작구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16-3644
34	동작구	우정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949-0104
35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37-6150
36	마포구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18-4331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37	서대문구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	02-379-6692
38	서초구	아이엠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088-3119
39	성동구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8834-0551
40	성동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214-3525
41	성북구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43-6150
42	성북구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21-7232
43	송파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4-0920
44	송파구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2-0420
45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8-2979
46	양천구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97-0420
47	영등포구	영등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33-3094
48	용산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02-716-0302
49	용산구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04-0420
50	은평구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8750-1724
51	은평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74-0817~8
52	은평구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157-0420
53	종로구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22-9921
54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66-9106
55	중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52-9050
56	중랑구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07-1072
57	중랑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48-0690
58	중랑구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680-1207



주거복지센터

지원대상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

지원내용

- SH주택도시공사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상담, 주거방향 설계 서비스, 주거관련 정책 및 제도 관련 시민교육, 공구대여(센터별 상이),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간편집수리 등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양 임대주택, 토지, 상가, 임대차관련 법률상담, 하자 접수 및 상담, 주거급여 등 모든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 SH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또는 홈페이지(www.i-sh.co.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또는 홈페이지(www.lh.or.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주거복지센터	070-5008-9216
2	강동구	강동주거복지센터	02-6933-6870
3	강북구	강북주거복지센터	02-980-4808
4	강서구	강서주거복지센터	02-2661-0896
5	관악구	관악주거복지센터	02-875-3197
6	광진구	광진주거복지센터	02-2138-8373
7	구로구	구로주거복지센터	02-853-9275
8	금천구	금천주거복지센터	02-2627-8499
9	노원구	노원주거복지센터	02-930-1180
10	도봉구	도봉주거복지센터	02-6958-8081
11	동대문구	동대문주거복지센터	02-2138-1901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2	동작구	동작주거복지센터	02-816-1688
13	마포구	마포주거복지센터	02-6383-6100
14	서대문구	서대문주거복지센터	02-303-3733
15	서초구	서초주거복지센터	02-6202~9000
16	성동구	성동주거복지센터	02-6933-8051
17	성북구	성북주거복지센터	02-922-5942
18	송파구	송파주거복지센터	02-400-2271
19	양천구	양천주거복지센터	02-6933-6190
20	영등포구	중앙주거복지센터	02-2135-5690~7
21	영등포구	영등포주거복지센터	02-785-7044
22	용산구	용산주거복지센터	02-6713-5055
23	은평구	은평주거복지센터	02-388-2979
24	종로구	종로주거복지센터	02-722-8658
25	중구	중구주거복지센터	02-2138-8791
26	중랑구	중랑주거복지센터	02-3421-8961

LH 한국토지주택공사(마이홈센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서울남부권 마이홈센터	02-2182-2733
2	강남구	서울권 마이홈센터	02-3416-3604
3	영등포구	서울서부권 마이홈센터	02-2169-8800
4	종로구	서울중부권 마이홈센터	02-6454-272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서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 가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02-6949-3133~4) / seoul.dfsc.or.kr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412-8551
2	강동구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9-4439
3	강서구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56-1991~2
4	광진구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456-0708
5	구로구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6	금천구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02-0502
7	도봉구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07-9633
8	동대문구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49-1717
9	동작구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835-7780
10	마포구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03-3618
11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94-4430
12	서초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597-8339
13	성동구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29-2456
14	성북구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912-5991
15	영등포구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6949-3133~4
16	용산구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798-9935
17	은평구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357-3345~6
18	중랑구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209-0665



장애인 체육시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

문의

-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내 장애인전용 체육시설현황 참조 (www.sports.koreanpc.kr)

연번	지역	소재지	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관악구	SRC 서울센터	02-871-3636
2	서울	송파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02-404-6240
3	서울	은평구	서부재활체육센터	02-388-6622
4	서울	노원구	동천재활체육센터	02-949-9114
5	서울	마포구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02-6070-9270
6	서울	강동구	서울수중재활센터	02-440-5700
7	서울	강서구	기쁜우리체육센터	02-3663-8114
8	서울	광진구	정립회관(체육센터)	02-446-1237
9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032-833-3055
10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032-719-7044
11	경기	광명시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02-2616-3700
12	경기	고양시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13	경기	고양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14	경기	광주시	성분도복지관(체육관)	031-799-0318
15	경기	광주시	SRC재활체육관	031-799-3891
16	경기	안산시	명휘체육센터	031-406-1145
17	경기	수원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수영장)	031-794-2266
18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031-259-0900
19	경기	성남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031-725-9500
20	경기	안양시	안양시수리장애인복지관	031-465-0950
21	경기	시흥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031-8084-0101

02 생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 취미생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서울특별시 복지포털(wis.seoul.go.kr) 또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www.kdda.or.kr)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강서구	햇별교실	02-2663-0670	성인	지적·뇌병변
2	강서구	강서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02-2662-3491~4	성인	뇌성마비
3	관악구	갑을장애인주간보호센터	02-6414-8586	성인	뇌성마비
4	광진구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	02-446-1237	성인	지체·뇌병변
5	노원구	하계장애인주간활동센터	02-6928-7350	성인	지체
6	노원구	오뚜기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02-932-4412/4415	성인	뇌성마비
7	도봉구	지앤지뇌병변주간보호센터	02-998-2854	청소년·성인	뇌병변
8	마포구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02-302-1066	성인	지체·지적·뇌병변
9	마포구	우리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02-359-1000	성인	뇌병변
10	서초구	서리풀주간이용센터	02-2055-2940	성인	뇌병변
11	성동구	성동주간보호센터	02-2290-3141	성인	지적·뇌병변
12	송파구	THE채움	02-2043-8460	성인	지적·자폐·뇌병변
13	용산구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02-713-5050	성인	지체·뇌병변
14	은평구	기원주간보호센터	02-353-1367	성인	지적·뇌병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휴식·요양·자립 준비를 위한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서울복지포털 내 장애인복지시설(wis.seoul.go.kr)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강서구	강서희망의집	02-2605-7980	성인	뇌병변
2	강서구	선린원	02-2654-3372	성인	뇌병변·중증장애
3	노원구	사랑샘단기보호소	02-932-4635	아동·청소년	만5세 ~ 만18세 장애인
4	동대문구	하늘꿈터	02-969-3927	성인(남성)	자폐·지적·뇌병변·지체
5	마포구	한벗동지	02-336-3100	아동·성인	뇌병변·지체
6	서대문구	다솜센터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	02-372-9394	성인(여성)	뇌병변·지적·자폐
7	은평구	포도원복지센터	02-386-4020	성인(여성)	발달·뇌병변·지체
8	종로구	라파엘의집	02-739-7020	아동·성인	뇌병변·중증장애
9	중랑구	다운누리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02-434-2114	성인(여성)	지적·뇌병변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자립을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지원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www.jjang2.or.kr) 참조

〈서울〉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강동구	암사재활원	02-441-0407	아동	발달·뇌병변·중복장애
2	강동구	주몽재활원	02-427-9734	아동·청소년	지체·뇌병변
3	강북구	디딤자리	02-987-6009	영유아(만0~6세)	모든장애
4	노원구	늘편한집	02-933-5228	성인	지체·뇌병변
5	노원구	쉽터요양원	02-937-5057	성인(만19~45세)	지체·뇌병변
6	성북구	승가원행복마을	02-921-6410	아동(만4~18세)	지적·지체·뇌병변
7	용산구	가브리엘의 집	02-757-1511	아동·성인	시각(필수)·중증장애
8	용산구	영락 애니아의 집	02-754-8507	아동	뇌병변
9	은평구	시립평화로운집	02-3156-6500	성인남성	발달·지체·뇌병변·시각

〈경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1	광주시	SRC보듬터	031-799-3970	아동(만7세~)·성인	지체·뇌병변
2	광주시	한사랑마을	031-764-2115	아동·성인	지체·뇌병변(중증)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대상	장애유형
3	광주시	한사랑장애영아원	031-764-1119	영유아(6개월~4세)	모든장애(중증)
4	김포시	해맑은마음터	031-981-0908	아동	발달·지체(뇌병변)
5	김포시	향유의집	031-981-0909	성인	모든장애(중증)
6	남양주시	송천한마음의집	031-559-4322	성인	발달·지체(뇌병변)
7	여주시	다산하늘센터	031-885-7771	성인	발달·뇌병변
8	이천시	새생명의집	031-634-8777	성인	발달·지체(뇌병변)
9	포천시	생수의집	031-536-0585	성인	지적·뇌병변·언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립생활, 사회적응, 여가생활, 정서안정 등 지원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ghcenter.org)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구로구	오뚜기하우스1호, 2호	070-8881-4415	성인(남성) / 뇌병변
2	서대문구	다솜그룹홈	02-303-0867	성인(남성) / 지적·지체
3	강남구	신망애	02-547-4186	성인(남성) / 지적·지체



자립생활주택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또는 퇴소자

지원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

문의

서울시복지재단(☎1670-5755) / www.welfare.seoul.kr 참조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Good Job 자립생활센터	02-518-2197~8
2	강동구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85-0546
3	강동구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42-9664
4	강북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08-7776
5	강서구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664-0874
6	구로구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57-9501
7	구로구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16-3391
8	금천구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035-4340
9	도봉구	도봉노적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5-2887
10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자립생활센터	02-959-5603
11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37-6150
12	성동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214-3525
13	송파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04-0920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4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608-2979
15	영등포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6081-5900
16	은평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374-0818
17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766-9106
18	중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52-9050
19	중랑구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2207-1072

03 직업시설



근로사업장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www.kavrd.or.kr)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광진구	정림전자	02-446-6867
2	노원구	동천	02-974-2950
3	서대문구	그린내	02-303-4520
4	송파구	굿월스토어(시립)밀알송파점	02-6913-9191
5	종로구	더해봄	02-742-0660
6	파주시	형원	070-4369-7000
7	파주시	에덴하우스	031-946-7030



보호작업장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프로그램 제공
-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www.kavrd.or.kr)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북구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02-986-7733	
2	강서구	강서구휴먼희망일터	070-7731-3620	휠체어 사용 어려움.
3	강서구	초록등대장애인보호작업장	02-2603-2683	양손작업가능한자
4	관악구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02-887-3629	
5	광진구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02-468-4376	양손작업가능한자
6	서초구	사랑의일터	02-3477-5111	
7	영등포구	라피드보호작업장	02-2677-8008	
8	중랑구	참좋은센터	02-491-3773	
9	중랑구	원광보호작업장	02-438-2605	

04 재활병원



재활병원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내 병원·약국찾기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2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3	강남구	우리들병원	02-513-8200
4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1544-7522
5	강남구	메드렉스병원	02-6011-6000
6	강남구	청담병원	02-2104-2000
7	강남구	제일정형외과병원	02-501-6868
8	강남구	광혜병원	02-538-7111
9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114
10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114
11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11
12	강북구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02-903-3232
13	강북구	국립재활원	02-901-1700
14	강북구	성신병원	02-986-1313
15	강북구	국립재활원	02-901-1700
16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1522-7000
17	강서구	서울근나무병원	02-2695-1155
18	강서구	서울대효병원 강서점	02-2663-1114
19	강서구	강서바른세상병원	02-2603-0300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20	강서구	솔병원	02-2064-7575
21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1877-8875
22	관악구	강남고려병원	02-874-8001
23	관악구	조인트힐병원	1899-7272
24	관악구	심정병원	1588-3330
25	관악구	척편한병원	02-6676-6000
2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1588-1533
27	광진구	바른본병원	1577-9844
28	광진구	제니스병원	02-3436-8888
29	광진구	연세무척나은병원	02-3425-8200
30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31	구로구	리본병원	02-2613-7000
32	구로구	구로참튼튼병원	070-4286-7246
33	금천구	서울대효병원 금천점	02-896-2114
34	금천구	서울바른세상병원	02-2111-9700
35	금천구	아카시아병원	02-858-0067
36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02-950-1114
37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38	노원구	파로스병원	02-938-8540
39	노원구	노원참튼튼병원	02-3392-9100
40	도봉구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02-901-3114
41	도봉구	도봉병원	02-3492-3251
42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43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02-2244-0191
44	동대문구	하늘병원	02-2246-8750
45	동대문구	맑은수병원	02-2681-0119
46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1800-1114
47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2114
48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2228-0114
49	서대문구	의료법인제민의료재단동서병원	02-337-1110
50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588-1511
51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52	성동구	학교법인대진교육재단 제인병원	02-3408-2100
53	성북구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1577-0083
54	성북구	의료법인우신향병원	02-926-7505
55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56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14
57	양천구	서울특별시서남병원	1566-6688
5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02-2650-5114
59	양천구	연세로이 재활의학과의원	02-3666-8886
60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1661-7575
61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1899-1475
62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02-2639-5114
63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02-829-5114
64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02-840-7114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65	영등포구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02-3284-7777
66	영등포구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02-2635-2809
67	영등포구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02-3284-7777
68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69	용산구	금강아산병원(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02-799-5000
70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1811-7755
71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72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02-6020-3000
73	은평구	서울특별시서북병원	02-3156-3000
74	은평구	서울특별시은평병원	02-300-8114
75	은평구	연세노블병원	02-384-0009
76	은평구	의료법인 성누가의료재단 성누가병원	1661-9666
77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1588-5700
78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79	종로구	서울송인병원	02-737-7582
80	종로구	로이병원	1644-7541
81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82	중랑구	녹색병원	02-490-2000
83	중랑구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02-2276-7000
84	중랑구	서울선병원	02-436-1900
85	중랑구	러스크서울병원	02-3426-0100
86	중랑구	라본병원	02-2209-6677
87	중랑구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02-2036-0200



장애인치과

문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www.sndcc.org) 내 장애인진료치과찾기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1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내 치과	02-2662-3491~4
2	노원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내 치과	02-932-4412
3	마포구	푸르메빅스어린이재활병원 통합치과치료센터	02-6070-9171
4	성동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02-2282-0001, 0012
5	종로구	푸르메치과의원	02-6395-7020
6	종로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522-2700

05 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대상

특수교육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지원, 순회교육 및 치료관련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운영으로 특수교육 지원 등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교육지원청 부설기관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02-3999-598, 624, 027) / www.sen.go.kr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 행정구
1	강남구	강남서초 특수교육지원센터	02-459-1013	강남구/서초구
2	강서구	강서양천 특수교육지원센터	02-3665-0806~7 02-3665-0812~13	강서구/양천구
3	구로구	남부 특수교육지원센터(본원)	02-861-3-2416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4	노원구	북부 특수교육지원센터	02-956-1040	노원구/도봉구
5	동작구	동작관악 특수교육지원센터	02-833-2895	동작구/관악구
6	성동구	성동광진 특수교육지원센터	02-2292-6411	성동구/광진구
7	성북구	성북강북 특수교육지원센터	02-911-1078	성북구/강북구
8	송파구	강동송파 특수교육지원센터	02-414-2634	송파구/강동구
9	영등포구	남부 특수교육지원센터(분원)	02-2038-2700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10	은평구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	02-715-0953	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
11	중구	중부 특수교육지원센터	02-2278-6587~8	중구/종로구/용산구
12	중랑구	동부 특수교육지원센터	02-433-4327	중랑구/동대문구



장애전담어린이집

문의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 참조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북구	까리타스어린이집	02-996-1556	법인·단체등
2	구로구	아나올장애아어린이집	02-852-1628	국공립
3	구로구	에덴장애아어린이집	02-2625-9403	법인·단체등
4	노원구	초록어린이집	02-951-6118	국공립
5	도봉구	두발로어린이집	02-999-2855	법인
6	도봉구	해바라기어린이집	02-999-0691	민간개인
7	마포구	우리마포어린이집	02-702-3100	국공립
8	양천구	서울베다니어린이집	02-2605-9237	민간개인
9	양천구	구립 신목장애아어린이집	02-2643-6554	국공립



특수학교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www.sen.go.kr) 내 특수교육기관 찾기 참조

연번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1	강동구	주몽학교	070-8255-0500	지적·지체
2	관악구	새롬학교	070-4612-4242	지체
3	구로구	서울정진학교	02-2688-1304	지적·지체
4	노원구	서울정민학교	02-978-8405	지체
5	마포구	한국우진학교	02-304-6255	지체
6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재활학교	02-2123-8141	지체
7	서초구	서울나래학교	02-2058-0190	지체

참고문헌

- 군자출판사(2013) 「뇌성마비」
- 군자출판사(2016) 「알기 쉬운 뇌성마비」
- 시그마프레스(2012) 「신경언어장애」
- 보건복지부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http://www.welfare.seoul.kr>)
-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s://wis.seoul.go.kr>)
- 서울시청 누리집(<https://news.seoul.go.kr>)
- 강서구청 누리집(<http://www.gangseo.seoul.kr>)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http://knat.go.kr>)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누리집(<http://www.seoulats.or.kr>)
- 한국관광공사 누리집(<http://www.visitkorea.or.kr>)
-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http://www.hinet.or.kr>)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누리집(<http://www.koil.kr>)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http://seoul.dfsc.or.kr>)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http://www.jjang2.or.kr>)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누리집(<http://www.kdda.or.kr>)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누리집(<http://www.kavrd.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누리집(<http://www.sndcc.org>)
- 서울특별시 교육청 누리집(<http://sen.go.kr>)
- 강서양천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en.go.kr/sedu/gangseo/index.do>)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2020 뇌성마비장애인 복지가이드북

1판 1쇄 발행	2014년 12월 31일
2판 1쇄 발행	2015년 08월 31일
3판 1쇄 발행	2016년 11월 30일
4판 1쇄 발행	2017년 12월 20일
5판 1쇄 발행	2019년 08월 30일
6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16일

발행처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발행인 박세영
편집인 박선희·이수민·김소희
주소 (075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전화 02-2662-3491~4
팩스 02-2662-2700
홈페이지 www.grccp.or.kr
디자인 스토리에이티

※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강서노성마비복지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방화동 452-5)

T. (02)2662-3491~4 F. (02)2662-2700

www.grccp.or.kr